

#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13
----------	------

발의년월일 : 2015. 3. 2.

발 의 자 : 손관승 의원 등 12명

## 1. 제정이유

- 가.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은 공원 및 도로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속에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상태임.
- 나. 바닥분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다. 이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정의하며, 수경시설의 종류를 공공 수경시설과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함. (안 제1조 ~ 제3조)
- 나.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수소이온농도·탁도·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2)대장균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3)레지오넬라균은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분석방법으로 규정함. (안 제6조)

마. 시장은 물놀이를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파악된 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음.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안 제7조)

바. 시장은 수질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시 관계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안 제8조)

사.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안 제9조)

- 아.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0조)
- 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5. 예산수반 사항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6. 관계법령발췌서, 입법사례 및 입법동향 : 붙임

7. 기타 참고사항 : 집행부 검토의견서 등

##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 주체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 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 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 레지오넬라균 :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 분석방법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제5조 관련)

수질 항목	적정 기준	비고
수 소 이 온 농 도	5.8 ~ 8.6	
탁 도	4NTU 이하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미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질 산 성 질 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레 지 오 넬 라 균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